

일본의 선박안전 관리법제

1. 시작하며

선박은 자동차 등의 교통기관과 비교하여 대량의 화물과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며, 해상을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 중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운행 중 선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선박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및 설비 등의 요건을 정하고,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박 및 부품을 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선박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부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제도 등을 통해 검사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II. 선박안전검사의 수행주체 및 검사대상

1. 선박안전검사의 수행주체

일본의 경우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주체가 나누어진다. 즉,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하여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국토교통성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총톤수 20톤 미만(이하 “소형선박”이라고 함)은 국가를 대신하여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Japan Craft Inspection Organization, 이하 “JCI”라고 함)¹⁾가 검사를 실시한다.

2. 선박안전검사의 대상

1) 선박검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과 소형선박 중 일부는 선박검사의 대상이 된다.

〈표1〉 검사대상 소형선박²⁾

엔진이 부착된 선박	모터보트, 기구가 부착된 요트, 수상오토바이, 낚시배(遊漁船), 12해리 이상에서 작업하는 어선, 여객선, 소형겸용선, 교통선, 작업선, 화물선 등
엔진이 부착되지 않은 선박	20해리 이상 운행하는 요트, 피예(被曳)인객선, 피예(被曳)인낚시배, 노를 이용한 여객선(여객정원이 7인 이상)

1) 해당기구의 자세한 사항은 <http://www.jci.go.jp/> 참조.

2) <http://www.jci.go.jp/inspection/kensataishou.html>.

〈표2〉 검사대상 외의 소형선박³⁾

엔진이 부착된 선박	(1)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선박 ① 정원이 3인 이하일 것 ② 선외기선(船外機船)으로 길이 5미터 미만 선박의 경우에는 출력이 7.4kW 이하일 것 ③ 아래의 수역만을 운행할 것 - 호수 또는 댐 - 보 등으로 저류된 수역으로 50평방킬로미터 이하의 수역 - 그 밖에 고시로 지정된 호수나 해역	※ 단, 잠수함, 수중익선(水中翼船), 에어쿠션정 등의 특수선, 위험물산적선(散積船: bulk carrier) 등은 검사대상
	(2) 길이 3미터 미만으로 엔진의 출력이 1.5kW 미만의 소형선박(이른바 “미니보트”)	※ 단, 6인을 넘는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은 검사대상
엔진이 부착되지 않은 선박	노나 작대기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범선, 연해주역을 넘어서 운행하는 선박, 잠수함, 수중익선, 에어쿠션정 등의 특수선, 위험물산적선, 여객운송을 하는 선박은 검사대상
	길이 12미터 미만의 범선	
	돛줄장치(범장(帆裝))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2) 이외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⁴⁾

- ①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되는 구난용선박(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선박)
- ② 계선(繫船) 중인 선박(계선신고를 하고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한 선박)
- ③ 고시로 정해진 아래의 수역만을 운행하는

선박

- 모터보트경주법의 경정장
- 모터보트경주선수 훈련용 수역
- 동경디즈니랜드 내의 인공호수 등
- ④ 해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해역 및 내수면에서만 작업하는 소형어선

3) <http://www.jci.go.jp/inspection/kensataishou.html>.

4) <http://www.jci.go.jp/inspection/kensataishou.html>.

III. 선박안전검사의 종류와 내용

1. 검사의 종류

선박안전법에서는 강제검사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특별검사, 제조검사와 임의검사인 예비검사, 준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1) 정기검사(선박안전법 제5조)

(1) 대상 및 내용

처음 선박을 운행시키는 때나 선박검사증서

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 받는 검사로 이 검사에 합격하면 새로운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된다.

정기검사는 선체, 기관, 돛줄장치(범장(帆装)), 조타, 계선 및 양묘(揚錨)시설, 구명 침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실시되는 정밀한 검사이다. 또한 만재흡수선(滿載吃水線)⁵⁾의 표시와 무선통신 등이 의무로 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도 검사대상이 된다.

(2) 유효기간⁶⁾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선박의 총톤수와 용도 등에 따라서 다르다.

〈표3〉 검사 유효기간

항행구역	용도	20톤 미만	20톤 이상
평수구역	- 여객선 - 위험물산적선 - 특수선 - 보일러가 있는 선박 - 일체형 푸셔바지(pusher barge)	5년	
	그 외의 선박	6년	
연해 이상의 운행구역	- 여객선 - 위험물산적선 - 특수선 - 보일러가 있는 선박 - 일체형 푸셔바지(pusher barge)	5년	
	그 외의 선박	6년	5년
어선	- 보일러가 있는 경우	5년	
	- 보일러가 없는 경우	6년	5년

5) 일본 선박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운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만재흡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6) https://www.tb.mlit.go.jp/shikoku/soshiki/kaijyou/senpaku_kensa.html.

2) 중간검사(선박안전법 제5조)

(1) 내용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검사로, 정기검사로 검사를 받았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적 간단한 검사이다.

(2) 검사기간

① 국가가 검사를 실시하는 선박

- 외항여객선 :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 매년(1년이 되기 3개월 전)
- 내항여객선 및 외항화물선 :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 매년(1년이 되기 3개월 전 · 후)
- 내항화물선 및 어선 :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중간(1년 9개월째부터 3년 3개월 까지)
-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중간(2년 9개월째부터 3년 3개월까지)

② JCI가 검사를 실시하는 선박

- 여객선 이외의 어선 :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중간(2년 9개월째부터 3년 3개월 까지)
- 총톤수 5톤 미만의 여객선 :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중간(1년 9개월째부터 3년 3개월까지)
- 총톤수 5톤 이상의 여객선 :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 매년(1년이 되기 3개월 전 · 후)

3) 임시검사(선박안전법 제5조)

(1) 내용

정기검사, 중간검사 등의 정해진 시기 이외의 시기에 이루어지며, 선박의 개조, 수리 등을 받은 때, 항행구역과 최대탑재인원 등 운행상의 조건을 변경하는 때, 해난이 발생한 때 등에 받게 되는 검사이다.

(2) 범위

- ① 무선통신 등과 관련하여 개조 또는 수리
- ② 선박의 복원성,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 ③ 키 도는 조타장치에 대한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 ④ 선박의 길이, 폭, 깊이의 변경
- ⑤ 그 외 선박의 주요한 구조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4) 임시항행검사(선박안전법 제5조)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선박을 임시로 항행시킬 때 받는 검사이다. 예를 들어 선박검사증서의 교부를 받지 않은 선박을 검사 등을 위해 수검지로 회항할 때이다.

5) 특별검사(선박안전법 제5조)

국토교통장관이 일정한 범위의 선박에 대해서 현저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료, 구조,

설비, 성능이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들 선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다.

6) 제조검사(선박안전법 제6조)

선박안전법시행지에서 제조하는 길이 3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체 기관 및 배수시설과 만재흡수선에 관한 구조, 설비에 대해서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공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검사로서 선박제조자가 의무대상자이다.

7) 예비검사(선박안전법 제6조)

선박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내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다.

예비검사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품목은 소형 선박의 선체, 기관, 조타설비, 전기설비 등이며, 예비검사에 합격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8) 준비검사

선박 또는 선박에 비치하려고 하는 물건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는 당해 물건과 관련한 정기검사 또는 이들 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9) 검정(선박안전법 제6조의 4)

선박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선박검사의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국가의 형식승인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제품제조단계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검정의 품목은 소형선박용 구명설비·소방설비, 항해용구 등이 있고 검정에 합격하면 인증을 받게 되며, 검정에 합격한 것은 선박에 탑재 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정밀검사에서 제외된다.

〈표4〉 예비검사 합격마크와 검정마크⁷⁾

예비검사 합격마크

검정마크


2. 검사의 주요내용⁸⁾

검사의 주요내용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7) <http://takamatsu-office.com/kensa.html#3>.

8) <http://takamatsu-office.com/kensa.html#3>.

〈표5〉 검사의 주요내용

검사의 주요 내용	검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의 구조, 강도확인 · 선체의 수밀성 등의 확인 · 복원력, 부력 등을 확인하고 최대 탑재인원을 결정 	침수 및 전복방지	안전운항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실 등 화기사용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재료의 사용확인 - 인화성가스발생이 없는 것을 확인 - 연료유 등의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 	화재 및 폭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진의 구조, 강도확인 · 엔진, 프로펠러 등의 작동확인 · 키의 조종 등을 확인 · 항해용구, 항해등 등의 구비를 확인 	충돌 및 표류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출구, 통로 등을 확인 · 구명설비의 구비 등을 확인 · 소방설비의 구비 등을 확인 	탈출, 구명, 소화	만일의 사고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난신호의 구비 등을 확인 	구조	

3. 검사의 기준

선박검사제도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인 기술요건은 선박안전법 하에 마련된 다수의 국토교통성령(어선에 관한 기준은 농림수산성과의 공동성령)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형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요건은 주로 소형선박안전규칙,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소형어선안전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JCI는 이들에 근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IV. 선박안전법상의 벌칙 및 JCI에 대한 감독

1. 선박안전법 상의 벌칙

선박안전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선박의 항행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⁹⁾

9) <http://www.kanno-marine.com/kensa.html>.

〈표6〉 규정위반 벌칙

위반사항	벌칙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증 또는 임시항행허가증이 없는 선박을 항행시키는 경우(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 지정된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시킨 경우 · 최대 탑재인원을 넘어서 여객 또는 그 외 사람을 승선시킨 경우 · 중간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시킨 경우 · 안전에 관계되는 개조나 수리를 한 선박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시킨 경우 · 그밖에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행허가증에 지정된 조건에 위반해서 항행시킨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행허가증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행허가증을 선내에 비치하지 않고 항행시킨 경우 · 선박검사증을 부착하지 않고 항행시킨 경우 · 선박검사수첩을 선내에 비치하지 않고 항행시킨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

2. JCI에 대한 감독

1) 감독명령 및 보고, 검사

국토교통장관은 선박안전법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동법 제25조의 39). 또한 국토교통장관은 선박안전법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에 대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에 입회하여 업무 상황이나 서류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회조사의 권한은 범죄조사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동법 제25조의 40).

2) 벌칙

선박안전법 제25조의 40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기구의 임직원에게 대해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도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5조의 43).

V. 마치며

선박사고의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안전을 위한 검사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선박을 국가가 검사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규모 이하의 선박(총톤수 20톤 미만)은 민간기구인 JCI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선박안전법상의 검사규정은 검사대

상 선박이나 검사의 종류, 벌칙 등에서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경 석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참고문헌

<http://www.mlit.go.jp/index.html>.

<https://www.tb.mlit.go.jp/shikoku/index.html>.

<http://www.jci.go.jp/index.html>.

<http://takamatsu-office.com/index.html>.

<http://www.kanno-marine.com/index.html>.